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340호
- 나. 발 의 자 : 임규호 의원(찬성자 13명)
- 다. 발의일자 : 2023년 10월 16일
- 라.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2. 제안이유

- 예산낭비와 부실.방만 운영 및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촉발해 온 지역축제 판매 먹거리의 과도한 가격 문제 등을 본보기삼아, 지역 축제 전반의 공공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지역축제의 계획.준비.실행.평가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함으로써 부실,방만한 지역축제를 방지하고, 예산낭비를 근절하는 건전재정을 달성함으로써 시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건강한 지역축제를 육성.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6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1. 축제 판매상품의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나. 제16조제2항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판매상품의 공정가격을 준수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한다.

다. 제18조제3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축제 목표의 적절성
2. 축제 프로그램의 우수성
3. 인력 배치 및 운영의 적절성
4. 행사장 안전 관리
5. 화장실 등 편의시설 관리
6. 축제 홍보의 효과성 및 축제 정보의 접근성
7. 상품 판매 가격의 공정성
8. 친환경적 행사 운영
9. 축제 참여자 만족도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지역축제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축제의 세부 평가 지표를 마련하여 지역축제의 부실화를 예방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개정안의 타당성

- 최근 지역축제에서 판매되는 먹거리 등이 과도한 가격으로 판매되면서 지역 이미지가 훼손되고 지역 물가가 상승하는 역효과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축제 전반에 공공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개정안은 지역축제 판매상품의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역축제 개최를 위한 정성적 평가 지표를 제시하고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부실·방만한 축제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매년 시행하는 평가로 인해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어 표준화된 평가 지표에 따라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게 되면 획일적인 축제가 양산 될 가능성도 있음.

다. 축제 판매상품의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등)

- 개정안은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축제위원회’에 ‘축제 판매상품의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축제 주최자 또는 기관이 판매상품의 공정가격 준수를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려는 것임.
- 축제위원회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동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구로, ▶시 축제 기본계획 등 정책의 수립·변경, ▶자치구민간 축제의 지원 및 육성 방안, ▶축제평가 및 축제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등 축제 관련 정책 전반을 다루고 있음.

《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현행) 》

제6조(축제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 축제 기본계획 등 정책의 수립·변경
2. 자치구·민간 축제의 지원 및 육성 방안
3. 시에서 추진하는 축제의 신설, 통합, 조정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관광자원화 방안
5. 음악축제의 개발 및 개최에 관한 사항
6. 축제평가 및 축제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7. 축제환경 조성 및 축제산업 발전 방안
8. 축제 관련 학술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9. 축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 전산화 등에 관한 사항
10.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축제의 지원대상 추천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축제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동안은 시 재정이 투입되는 축제라 하더라도 판매상품 가격에 대한 적정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않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판매 업체 또는 주최 측의 판단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어왔음.
- 그러나 지역축제 판매상품 가격이 지나칠 경우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불쾌감을 유발하며 지역축제뿐만이 아닌 지역 이미지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축제 판매상품 가격 안정화를 위한 서울시의 및 자치구·민간의 노력을 독려하는 본 입법 조치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는 주체는 중앙정부로, 지자체 차원에서 특정 가격을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할 것으로 보임.

라. 축제 평가 지표 신설(안 제18조제3항)

- 개정안은 서울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축제를 평가할 때 적용하는 평가 지표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평가의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이 제시하는 필수 평가 지표는 다음과 같음.

《 축제 평가 지표(개정안) 》

1. 축제 목표의 적절성
2. 축제 프로그램의 우수성
3. 인력 배치 및 운영의 적절성
4. 행사장 안전 관리
5. 화장실 등 편의시설 관리
6. 축제 홍보의 효과성 및 축제 정보의 접근성
7. 상품 판매 가격의 공정성
8. 친환경적 행사 운영
9. 축제 참여자 만족도

- 서울시가 추진하는 축제에 대한 평가는 축제 평가 및 모니터링 등을 총괄하는 서울시 직영(용역 사업)으로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축제 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음.
- 평가는 구체적으로 ‘종합평가’와 ‘만족도 조사’로 구분하는데, 서울예술축제(유망축제)와 5천만원 이상 민간축제를 대상으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시·자치구 축제나 서울예술축제(대표)축제, 5천만원 이하 민간 축제의 경우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으며, 두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문가 평가의 도입 여부임.

< 축제지원센터의 2023년 축제 대상별 평가방법 >

평가구분	대상	평가방법
종합평가	서울예술축제(유망축제), 50백만원 이상 지원하는 민간축제	전문가(50%)+관람객(30%)+ 모니터링(10%)+행정평가(10%)
만족도 조사	시 주최 축제, 자치구 축제, 서울예술축제(대표축제), 50백만원 미만 지원 민간축제	관람객(60%)+모니터링(20%)+ 행정평가(20%)

- 각 평가 방법별로 개정안이 제시한 지표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음.

< 평가 방법별 개정안 지표 포함 여부 >

연번	개정안 지표	전문가 평가	모니터링 평가	관람객 평가
1	축제 목표의 적절성	○		
2	축제 프로그램의 우수성	○	○	○
3	인력 배치 및 운영의 적절성	○	○	○
4	행사장 안전 관리	○	○	○
5	화장실 등 편의시설 관리	○	○	○
6	축제 홍보의 효과성 및 축제 정보의 접근성	○	○	○
7	상품 판매 가격의 공정성			
8	친환경적 행사 운영	○	○	
9	축제 참여자 만족도			○

-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9개의 지표 중 대부분은 이미 축제지원센터에서 평가하고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이를 명시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

- 이 중 ‘축제 목표의 적절성’ 지표는 모니터링 평가, 관람객 평가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지만 동 조례의 제2조(정의)에 따른 문화예술 향유, 관광 진흥, 시민화합, 문화의 다양한 가치 구현, 전통계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관한 지표로 축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평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 ‘상품 판매 가격의 공정성’ 지표는 전문가·모니터링·관람객 어떤 평가에서도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상품 가격 안정화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아직 실시된 전례가 없고, 시장 가격을 강제할 수 없는 한 각 축제마다 판매상품 적정가가 다를 수 있어 절대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개정안의 지표 중 ‘화장실 등 편의시설 관리’는 야외 행사가 실내 행사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받는다라는 논란이 있지만, 편의시설의 구비 여부는 축제 운영의 수준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며 야외 행사와 실내 행사의 평가 방법을 달리 설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지표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9개의 필수 평가 지표 중 ‘상품 판매 가격의 공정성’을 제외한 나머지 8개의 지표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드림.

< 수정의견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8조(축제의 평가) ①·② (생략)	제18조(축제의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축제의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정량적·정성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생략)

③ -----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
-----.

1. 축제 목표의 적절성
2. 축제 프로그램의 우수성
3. 인력 배치 및 운영의 적절성
4. 행사장 안전 관리
5. 화장실 등 편의시설 관리
6. 축제 홍보의 효과성 및 축제 정보의 접근성
7. 상품 판매 가격의 공정성
8. 친환경적 행사 운영
9. 축제 참여자 만족도

④ (현행과 같음)

③ -----

-----.

1. ~ 6. (개정안과 같음)

<삭 제>

7. (개정안 제8호와 같음)

8. (개정안 제9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의안번호
1340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임규호 의원	'23.10.1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개정 필요성> ○ 최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지역축제 먹거리의 과도한 가격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축제 전반의 공공성 제고 도모 ○ 축제의 계획·준비·실행·평가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부실, 방만한 지역축제를 방지하고 예산낭비 근절 <주요 입법 요지> ○ 서울시 축제위원회 자문 기능에 '축제 판매상품의 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규정 ○ 축제 평가 운영에 있어 축제 목표의 적실성, 프로그램 우수성, 안전관리, 상품 판매 가격의 공정성 등 9가지 항목 규정				
	추진경과	○ 해당없음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 축제에서 판매하는 먹거리 등에 과도한 가격을 책정하여 촉발되는 사회적 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가격이 정착되는 축제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며 제6조 서울시 축제위원회 자문기능에 축제 판매상품 가격안정화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안)은 동의함. ○ 다만, 제18조 축제평가 항목 규정은 평가의 경직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유형별 맞춤형 평가가 어려워 형식적 평가에 그칠 우려가 있어 수용 곤란 ※ '23년 서울시 축제평가 현황 : 자치구, 민간, 공연예술제, 국악행사 등 200여개 축제 평가 중				
대응방안	○ 발의의원 방문 설명 및 이해설득 예정				
상 임 위 처리결과					
향후계획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팀장	배진아(☎2133-2569)	담당	유승운(☎2133-2570)